

의견수렴 없이 바뀐 수업 방침...학생들 '부글부글'

조선대, 학년 당 80명 이하 1개 합반 변경...선택권 침해 주장 생계 '적신평'·졸업 난항·코로나19 감염 우려 등 문제 제기 방침 변경 이전실태 미고려...관계자 "향후 주·야간선택" 개선

#조선대학교 학생 A씨는 최근 학교로부터 2022년 2학기 수강신청과 관련된 공지 문자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학교가 이번 학기부터 교무처의 방침에 따라 해당 학년이 80명이 되지 않는 학과의 수업은 모두 1개 합반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혀서다. 이로 인해 기존 주·야간으로 나뉘었던 '전공' 수업 일부가 야간 합반으로 개설돼 A씨는 원하는 과목을 듣기 위해선 꼼짝없이 야간에 강의를 들어야 한다. 이에 A씨는 "다른 수업도 아닌 전공 수업을 학생들의 수요도 조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야간에 개설하는 게 말이 되나"며 "학교 수업 시간이 늦춰져 평일 저녁에 하던 야간 아르바이트도 꼼짝없이 그만둬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조선대학교가 2022년 2학기부터 교무처 방침에 따라 '80명이 되지 않는 학년의 학과 수업'을 모두 1개 합반으로 변경하면서 학생들의 불만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방침을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수립했고, 시행마저도 본 수강신청 전 예비수강신청 기간에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해서다.

더욱이 변경된 교무처 방침을 학교가 모든 재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전달한 것도 아니고, 일부 학과만 교학팀을 통해 공지한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 사이에선 '학교가 학생들의 불만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방침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방침 시행 이후 발생할 여러 문제점도 제기됐다.

A씨처럼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던 학생들은 수업이 야간에 개설됨에

따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적합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될 경우 생계에 적신평이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단일 전공이 아닌, 복수전공 학생들은 "제 때에 졸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대학교 각 학부에 따르면 복수전공 이수자는 승인 학과에서 정한 복수전공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각 과별로 이수학점에 차이는 있지만, 학과에서 정한 '전공 필수' 과목은 이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때문에 복수전공 학생들은 이번 교무처 방침 변경 이전에도 각 학과별 필수 과목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이번 방침으로 복수전공 학생들은 "수업 선택의 폭이 줄어들어 학부별 강의 시간이 겹치면 대안이 없다"

는 입장이다.

한 학생은 "어떻게든 4년 내에 졸업하기 위해 예비수강신청기간 동안 머리를 싸맸지만 결국 원하는 과목 모두를 담진 못했다"며 "바뀐 방침으로 학교를 한 학기 더 다녀야 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다가를 2학기부터 이번 방침과 함께 수업운영 방식이 강의실 기반 대면수업으로 바뀌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도 제기됐다.

1개 합반으로 운영할 경우 수강 인원 과 함께 밀집도가 높아져 감염 위험성도 덩달아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 탓에 학생들은 본 수강신청이 시작되기 전, 교무처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A씨는 "교무처 방침 변경이나 강의 시간 결정이 학교와 교수 재량이라고 해도, 수요조사나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

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기만"이라며 "2학기가 시작되기 전 학교는 이러한 실태를 고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야간 수업 시간에 맞춰 등교를 하면 중앙도서관을 제외하고 교학팀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설은 운영을 하지 않아 어떠한 업무도, 시설 이용도 할 수 없다"며 "학교는 방침 강행 이전 이러한 실태를 충분히 고려했으면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같은 사안에 대해 조선대학교 관계자는 "현재까지 합반 과정에서 재학생이 주간에 일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의를 야간에 개설한 학과와 과목이 있다"며 "내년부터는 재학생들에 대한 주·야간 수업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재영기자



영암군 금정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이 맞은 편에서 오던 SUV 차량과 충돌하면서 타이어가 터진 채 넘어져 있다.

타이어 터진 덤프트럭, SUV 충돌...2명 부상

도로를 달리던 덤프트럭 타이어가 터지면서 마주 오던 SUV와 부딪혔다.

16일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분께 영암군 금정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A(24)씨가 운전하던 25t 덤프트

럭이 타이어가 터져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중앙선을 넘어 옆으로 쓰러진 덤프트럭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마주 오던 SUV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덤프트럭 운전자 A씨가 중상을 입었고, SUV 운전자 B(51)씨도 경상을 입어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덤프트럭이 왼쪽 회전 구간을 지나던 중 뒷바퀴가 터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암=나동호기자

출산 아기 화장실 방치 사망...발달장애 산모 집행유예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산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갓 태어난 아기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아기의 목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

신을 유기하기까지 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백 부장판사는 "다만 사회연령이 12세 수준으로 전발 발달장애 상태인 점, 출로 분만 후 극도의 탈진과 두려움 속에 범행한 점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순천=남정민기자

"상속 마무리 안 돼" 전두환 회고록 손배소송 선고 연기

전씨 측 이순자 단독 상속 입증 밝혔으나 손자녀 3명과 공동 상속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17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는 전씨가 2017년 4월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저자인 전씨와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23일 항소심 진행 도중 전씨가 사망하면서 소송 수계 절차 진행이 필요해졌다.

전씨 측은 지난 3월 재판에서 부인 이순

자 씨가 단독으로 상속인 지위를 받기

로 했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선고가 미뤄졌다.

민법상 배우자는 1순위 상속자와 같은 자격으로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단독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를 해야 한다. 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4명(3남·1녀)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서 후순위인 손자녀들이 이씨와 함께 상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전씨는 생전에 재산이 29만원뿐이라고 주장했는데 현행법상 상속 대상이 아닌 미납 추징금 956억원을 제외하더라도 300억원이 넘는 국세와 9억원대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다.

전씨 측은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검토 중이며 이순자 씨가 한정승인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씨와 손자녀 3명 등 총 4명이 공동 상속하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이 민사 소송의 피고는 부인 이씨와 손자녀 3명, 회고록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 씨로 확인됐다.

5·18 단체 등은 이를 확인한 직후 지난 12일 손자녀들에 대한 소 일부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5·18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하고 당사자 명예를 훼손한 전씨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소송인 점, 재판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손자녀들에게 까지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민사 소송 1심 재판부는 전씨 부자에게 각각 4개 5·18 단체에 각 1천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천만원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9월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오복기자

김옥수 서구의원, 의장 당선 무효소송·가처분 신청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 위법 주장

무소속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이 16일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당선 무효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옥수 의원은 이날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위법과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14조에 명기된 '의장의 선포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며 "의장 선거는 무효이고 이

를 바로잡기 위해 광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속 변호사를 선임, 가처분과 무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7일 전반기 의장 선출 당시 임시 의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공직 후보 선출 시 전·후반기 의장단을 나누거나 의원단 전체 의견이 아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경선을 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기회균등원칙과 지방자치법, 선거법 등에서 보장한 선거권, 피선거

권 박탈로 위법성이 있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석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회의 진행을 지방자치법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명기된 '의장의 선포권'에 대한 침해이자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입법권을 갖은 구의원들이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위법하게 의장을 선출하는 모습에 자괴감이 든다"며 "올바른 지방의회사정립을 위해 광주 경실련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강승희기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Rg3홍삼을 선물하세요! 시대가 요청하는 Rg3홍삼!

**품질을 비교할 때
홍삼성분 함량 꼭 확인!!**

- 제품1g당 함유된 홍삼성분 함량
예) 고려홍삼순원액 - 1.6mg/g
홍삼사랑 ----- 2.7mg/g
- 홍삼농축액(홍삼성분70mg/g)기준 비율
예) 고려홍삼순원액 - 2.25%
홍삼사랑 ----- 3.8%
- 주요성분 Rb1+Rg1+Rg3 함량
예) 고려홍삼순원액 - 9mg/포
홍삼사랑 ----- 13mg/포
- 인삼성분을 변화시킨 산삼성분 Rg3
예) 고려홍삼순원액 - 4mg/포
홍삼사랑 ----- 6mg/포

실비용

고려홍삼순원액(70ml) 30포

고급선물용

홍삼사랑(60ml) 30포

홍삼성분함량과 가격을 비교해보세요!

고려홍삼순원액 50,000원 → 45,000원
홍삼사랑 150,000원 → 135,000원

고품질을 보증하는 바로 이 맛!

한약재, 첨가물 NO!	
홍삼성분 다량 함유	▶ 짹짹한 맛
산삼성분 Rg3 다량 함유	
6년근 1등삼 25지	▶ 풋내가 없음
국산 홍삼만 사용	▶ 느끼한 맛 없음
불필요한 고형분 제거	▶ 깔끔한 맛

**홍삼성분만으로도 맛과 색이 진하므로
다른 첨가물이 필요없습니다.**

혼자 먹기엔 아까운 품질!

동별 매장 모집 | 자격 : 6평 이상 매장 준비 가능한 분
보증금 : 없음

(주) 고려홍삼공사 061) 373-8179

www.고려홍삼.shop